

교원양성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및 직제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기능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원양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
2. 교원양성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
4.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교원자격 기준 및 결정 사항
5. 기타 교원양성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. 다만 위원 중에는 교원 양성에 관한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
②위원장은 교무처장이 겸임한다.

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위원은 교육대학원장 및 교직실장(당연직)으로 하고, 교육학과 및 교직 설치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회의는 매 학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6조(의결정족수)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6-1-16~2 제6편 위원회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